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7 - 12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
2017 - 130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7 - 13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7 - 132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4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7~129
----------	----------

제출일자 : 2017.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Ⅰ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1. 제안이유

2017년 읍·면 순방 시 북부권역 119안전센터 주민건의 지원요구 및 거창소방서의 협조요청에 따른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용양면 노현리 112, 113, 114번지
- 사업기간: 2017.7. ~ 12.
- 매입면적: 2,076㎡ (토지소유자: 조가매)
- 매 입 비: 300백만원(군비 300백만원)
- 주요기능: 용양면 119안전센터 건립
 - 화재의 초기대응과 응급환자의 적기 구조·구급
 -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3필지		2,076	88,370			
취득	토지	용양면 노현리 112	답	349	15,077	2017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용양면 노현리 113	답	1,094	45,948			
		용양면 노현리 114	답	633	27,345			

다. 추진경과

- 2017.2.2.: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부지 지원 검토 보고
 - 용양면 소재지 일원 약 990m² / 100백만원 정도
- 2017.3.27.: 용양면 부지 추천
 - 3개부지: 죽림리 304(군유지), 노현리 490-1(도 교육감)
노현리 112 외 2필지(사유지)
- 2017.4.19.: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2개 부지 적합 의견(노현리 490-1, 노현리 112 외)
- 2017.6.15.: 부지 현장 확인(군·소방서·용양면)
- 2017.6.23.: 용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 보고
 - 매입대상 부지 확정: 용양면 노현리 112, 113, 114 / 2,076m²
 - ※ 대상지 선정 사유: 용양면(주민 등), 거창소방서 현장의견 반영

라. 향후계획

- 2017.11. ~ 12.: 토지 보상 등 부지 매입
- 2018.1. ~ 12.: 대부계약 및 119안전센터 건립(거창소방서)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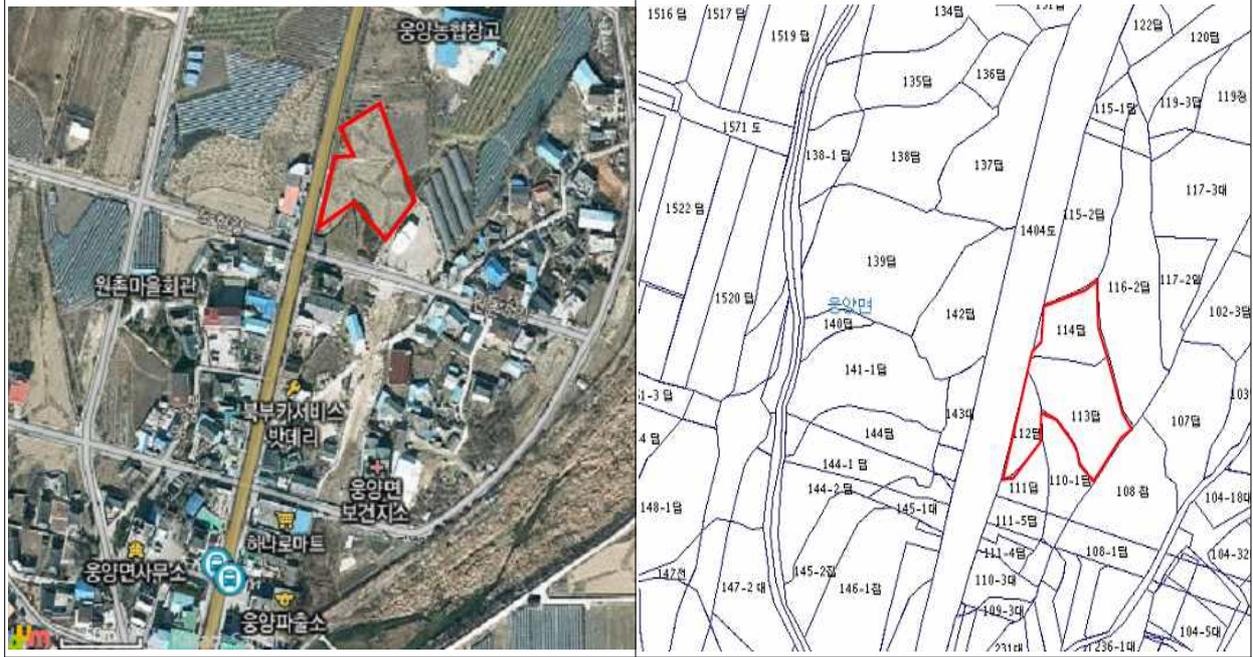
- 소방사각지역해소 및 소방 골든타임 확보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가. 위치도



나. 현장사진



②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1. 제안이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017년 특별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특산물 판매 및 친환경 교육을 위한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7.1. ~ 2019.12.(3년)
- 사업비: 290백만원
- 사업규모: 1,451m²
- 사업내용: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필지		1,451	290,200			
취득	토지	거창읍 가지리 188-1	전	897	179,400	2017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	조순감
		거창읍 가지리 188-2	전	378	75,600	2017		조순감
		거창읍 가지리 187	답	176	35,200	2017		형미생

다. 추진경과

- 공모사업 신청(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거창군→낙동강청): 2016.9.19.
- 공모사업 선정(낙동강유역환경청): 2016.12.19.
- 국농소마을회(강과사람) 사업부지 선정 통보: 2017.9.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 승낙 및 사전협의 완료: 2017.9.
- 감정평가 의뢰(진행 중): 2017.10.

라. 향후계획

- 2017.11.~12.: 토지보상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 2018년: 사업착공 및 사업추진
- 2019년: 사업준공 및 하천환경교육센터 운영

마. 기대효과

-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환경체험 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제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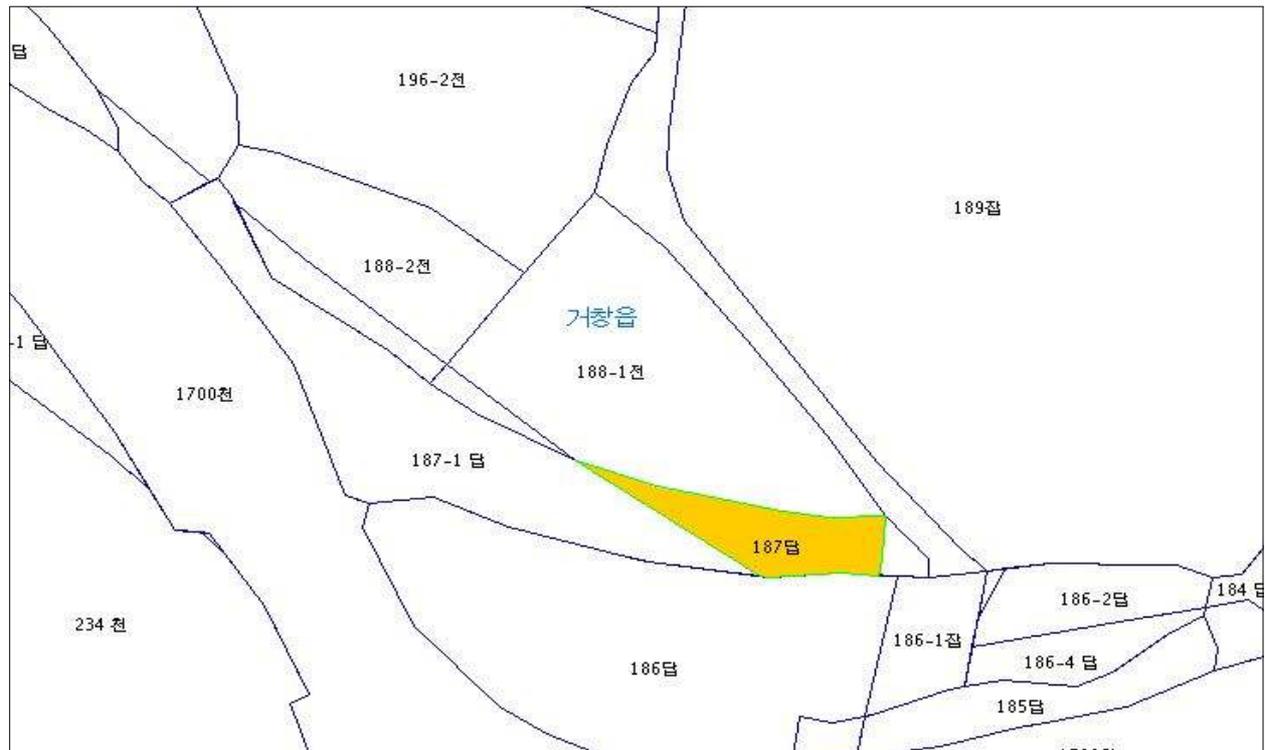
가. 위성사진



나. 현장사진



다. 지적도



③ 공유지 매각

1. 제안이유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허가 축사(양돈장)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관내

가. 처분개요

- 위 치: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1477-14, 1477-15
- 처분면적: 3,300㎡
- 기준가격: 11,710천원

나. 처분재산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필지		3,300	11,710
매각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14	목장용지	2,411	8,607
매각	토지	신원면 덕산리 1477-15	목장용지	889	3,103

다. 추진경과

- 1997.~ : 양돈업 시작.
- 2011.11.: 공유림 사용허가계약 체결(산림과)
- 2012.3.: 지목변경으로 공유재산 변경계약
 - ※ 임야⇒목장용지 지목 변경 후 산림과에서 농업축산과로 행정재산 이관
 - ※ 사용기간: 2019.10.31.까지
- 2017.9.: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조치 지시
- 2017.10.: 공유재산 특정감사 조치에 따른 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계획 보고

라. 향후계획

- 2017.12.: 토지매각(일반경쟁입찰)

마. 기대효과

-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행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농가에 적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축산업계의 어려움 해소.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으로 적법화 불가 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내려져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④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변경)

1. 제안이유

위천면 장기리 190번지 외 1필지를 수승대권역(복상, 위천, 마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사업 부지로 매입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매도의사 철회로 위천면 장기리 269-9번지(1필지)로 매입부지 변경하고자함.

2. 취득재산의 표시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7.1. ~ 2018.12.(2년)
- 사업비: 1,900백만원(국비 500, 도비150, 군비1,250)
- 사업규모: 4,066㎡(농기계보관창고 1동, 운영사무실 1동)
- 사업내용: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부지 매입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당 초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필지		3,438	50,539			
취득	토지	위천면 장기리 190	답	1,679	24,681	2017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강채희
		위천면 장기리 191	답	1,759	25,857			강채희

○ 변 경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필지		4,066	65,056			
취득	토지	위천면 장기리 269-9	답	4,066	65,056	2017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 매입	강승희

다. 추진경과

- 2016.11.9.: 2016년 제3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2016.12.9.: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 2017.2.: 신설에 따른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실시
- 2017.3.: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신청(농축산식품부)
- 2017.9.: 수송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주민설명회 개최

라. 향후계획

- 2017.12.: 토지매입
- 2018.12.: 건축물 신축 및 임대사업소 개소

마. 기대효과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으로 영농경영비 절감
- 임대농기계사업 확대로 농번기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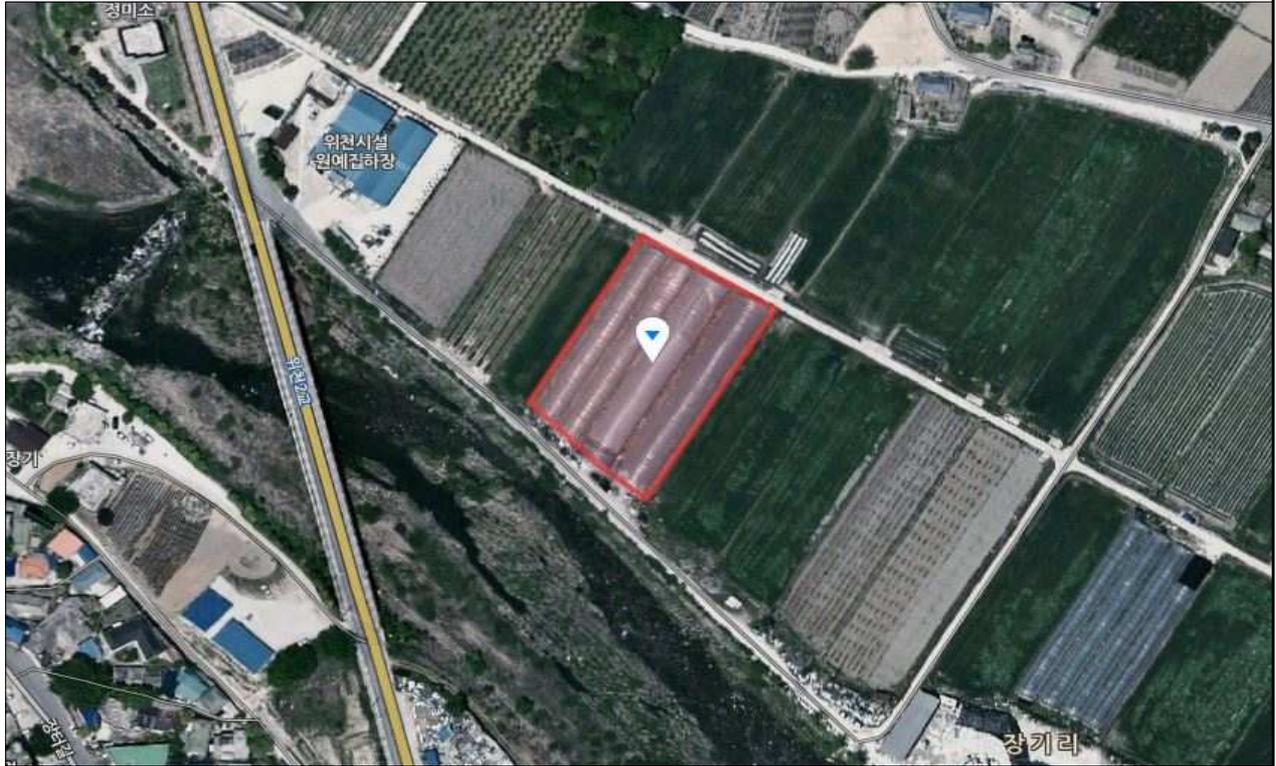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가. 위치도



나. 위성사진



다. 현장사진



수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변경)

1. 제안이유

거창읍 김천리 공유지(237-16)인근 237-9번지를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영업세입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를 현 보건소 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 사업기간: 2017.8. ~ 2018.6.
- 사업규모: 500m² (안심센터, 쉼터, 가족카페)
- 사 업 비: 1,377백만원(국·도비726, 군비651)

(단위:천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당 초	1,191,000	600,000	75,000	516,000	
변경 후	1,377,320	645,154	80,644	651,522	
증액금액	186,320	45,154	5,644	135,522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당 초

(단위: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토지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104,265	2017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	이귀순
건물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대	530	991,000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거창 군수

○ 변 경

(단위: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건물	거창읍 송정리 332-3	대지	500	2,754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거창 군수

다. 추진경과

- 2017.6.12.: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6.21.: 적합부지 검토 및 소유자 면담
- 2017.7.28.: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2개 부지 적합 의견(김천리 237-9, 237-16)
- 2017.7.31.: 거창군 치매지원 센터 건립 부지매입 계획 보고
 - 매입대상 부지 확정: 거창읍 김천리 237-9 /331㎡
 - ※ 대상지 선정 사유: 균유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 반영
- 2017.8.11.: 2017 제5회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17.9.13.: 제227차 거창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가결
- 2017.10.17.: 토지소유자 매도의사 철회 요청
- 2017.10.17.: 보건소 증축가능 여부 전문가 자문(증축가능)

라. 향후계획

- 2017.11.: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8.1.: 계약 및 공사 발주
- 2018.7.: 치매안심센터 개소

마. 기대효과

-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서비스 지원
- 낮시간 보호, 카페운영 등 경제활동 참여지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보건소 내 설치로 주민접근성 및 사업연계 등 사업 효율성 증대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가. 위성사진



나. 현장사진-치매안심센터 건립예정지(현재 공용차량 주차장)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30
----------	----------

제출일자: 2017. 10.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16.1.1.~2017.12.31.) 만료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다.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라. 위탁대상 사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교육사업과 정착지원사업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마. 재계약 방법: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

○ 2017.9.28. 심의결과 재계약 적결

바. 재계약 단체: 거창기독교청년회 / 이사장 표정숙

사. 재계약 기간: 2018.1.1 ~ 2019.12.31. / 2년

아. 소요예산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제16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0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분야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함
- 현 수탁기관은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을 돕고 있으며,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부문에서 2014년 도내 1위, 2016년 13개 사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84점을 달성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
- 특수시책사업으로 친정나들이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2018년부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추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수탁기관의 재위탁이 바람직함

나.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17.9월: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 2017.10월: 군의회 주례보고 → 일반의안 상정
- 2017.12월: 재계약 체결
- 2018.1.1. ~ 2019.12.31. / 2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라.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따로 붙임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 ❖ 2017.12.31.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이 종료됨
-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절로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함

I 위탁개요

○ 위탁현황

기관명	위탁단체	소재지	센터장	종사자	비고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창기독교청년회 이사장 표정숙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조미금	4명	

○ 위탁기간: 2016.1.1. ~ 2017.12.31. / 2년

- 최초 운영: 2008.1.30. / 거창기독교청년회 위탁

○ 위탁사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복지사업 업무

- 13개 사업, 390백만원 보조금 지원

○ 다문화가족 현황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일본	태국	몽골	우즈벡	미국	기타
322	131	70	39	27	22	17	7	3	2	1	3

II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일반의안 상정

○ 2017.12월: 재계약 체결

○ 위탁단체와 민간위탁 기간

- 위탁단체: 거창기독교청년회 / 이사장 표정숙

- 위탁기간: 2018.1.1. ~ 2019.12.31.

Ⅲ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0조

관 계 법 령(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위원회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31
----------	----------

제출일자 : 2017.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내용

거창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나. 위 치: 거창읍 시장1길 20

다. 사업내용: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

라. 위탁대상 사무

- 조합원간 농작업 구인·구직 알선
- 조합원간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
- 관외 인력유치·알선 및 지원사업
- 농작업 참여자 상해보험 지원
- 농작업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

마. 재 위탁 법인: 거창군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바. 재 위탁 추진 상황

- 수탁기관(거창군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재수탁 신청서 제출
: 2017.9.4
- 재위탁 자체 평가 실시: 2017.9.20.
- 재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17.9.27.

※ 심의위원: 6명(재 위탁 가결)

사. 향후 추진계획

- 재수탁기관: 거창군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위탁기간: 2018.1.1. ~ 2020.12.31.(3년간)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
-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 결정
- 위·수탁 운영계약서 체결 및 공증: 2017.12월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재 위탁)추진에 따른 장점

- 오랜기간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축적된 경험과, 조합원 (농가,농작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적기에 인력알선에 유리
- 관외인력유치를 위해 진주·부산시 대한노인회와 협약 체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다. 예산조치

- 2018년 민간위탁금 본예산 반영

라.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위탁(위탁기간갱신) 운영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 갱신 후 재위탁하여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 관련근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2조(적용범위)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현황

○ 센터현황

위탁기간	수탁법인	대표자	소재지	임직원	비고
‘17.1.1~’17.12.31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변동규	거창읍 시장1길 20	10명	

○ 연도별사업비현황

연도별	위탁비 (천원)	재원별 (천원)	증감사유
2014년	90,655	군비 90,655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2015년	90,655	군비 90,655	“
2016년	120,655	국비 30,000 군비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확대로 국비 지원
2017년	140,655	국비 50,000 군비 90,655	거함산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확대로 국비 지원

○ 사업참여 농가수

연도별	주요 품목별 참여농가				
	합계	사과	오미자	딸기 (단체)	기타
2014년	107	85	6	10	6
2015년	91	71	2	10	8
2016년	116	96	3	10	7
2017년 8월말	96	77	0	10	9

○ 사업참여 사업실적

연도별	농작업 알선실적			출퇴근 차량운행						숙 소 이용자 (명)
	참여인원(명)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2014년	9,288	8,859	429	164	1,652	164	1,652	0	0	숙 소 공사중
2015년	10,023	9,844	179	220	2,146	220	2,146	0	0	
2016년	10,974	9,974	1,000	238	2,662	218	2,162	20	500	500
2017년 8월말	8,710	7,519	1,191	270	3,141	249	2,490	21	651	630

○ 사업내용

- 농작업자 출퇴근을 위한 승합차 운행
- 장거리 출퇴근 농작업 참여자 대상 임차차량 운행
- 도시권(관외인력) 농작업 참여자 숙박시설 지원
- 농작업자 상해보험가입
- 농작업자 참여자 마일리지 제공사업: 정부 3.0 선도과제 선정사업
- 농작업자 안전교육, 농작업 교육 실시

□ 위탁사무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6조(지원범위)
 -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 농작업에 따른 재해보험(농작업근로자공제)으로 국비를 제외한 군비부담금
 - 농작업 참여자 및 농작업 능력향상 교육시 안전용품 제공 등

□ 위탁기간(재위탁 - 위탁기간 갱신):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 당 초: 2017.1.1. ~ 2017.12.31.(1년간)
- 변 경: 2018.1.1. ~ 2020.12.31.(3년간)
 -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17.9.27.)
 -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예산내역

- 예 산 액: 금150,000천원
 - 협동조합운영인건비: 50,900천원
 - 이사장활동비, 전임상담사 인건비, 보험료 등
 - 일반운영비: 16,600천원
 - 회의운영비, 조합사무운영비, 안전용품제작, 농작업 및 안전교육 등
 - 출퇴근운송사업비: 29,000천원
 - 차량유지비, 차량종합보험 등
 - 관외인력유치알선사업비: 53,500천원
 - 임차료, 식비, 숙박비, 숙소관리비 등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자체평가

- 평가 일: 2017.9.20.(수)
- 평가항목: 4항목
 - 수탁기관의 적격성
 - 농작업알선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거창군상시고용인력센터사업 운영계획의 타당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평가점수: 87점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심의위원회

- 개최일시: 2017.9.27.(수) 15:00 ~ 16:00
- 구성인원: 위원장 포함 6명
- 위 원: 6명
 - 관계 공무원: 1명(경제교통과장)
 - 관련 전문가: 5명(경남도립 거창대학 2, 농업회의소 1,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 1, 군의원 1)
- 심의결과: 현 수탁법인에 재위탁

□ 향후 추진계획

- 2017.11월: 군 의회 승인
- 2017.12월: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 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

① 인력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마감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있다.

1.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2. 농작업에 따른 재해보험(농작업근로자공제)으로 국비를 제외한 군비부담금
3. 농작업 참여자 및 농작업 능력향상 교육시 안전용품 제공 등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32

제출일자: 2017. 10. .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위탁관리기간 만료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거창사과테마파크체험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나. 위 치: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다.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 부 내 역	비고
계	7ha		
과원시설(체험장)	1.75ha	○사과체험장(1.5ha) ○오미자체험장(0.25ha)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5.25ha	○공원시설(5.25ha)	
		○부속건물 - 관리동 1동 (207㎡) - 농기계창고 및 저온저장고(61.2㎡)	

라. 위탁대상 사무

- 과원시설 (사과, 오미자과원): 사과나무분양, 꽃나들이축제, 수확행사 등
- 공원시설: 예취작업, 수목관리 등 공원 내 환경정비
- 관리동 및 농기계창고 등 기타부속시설 유지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없음

(시설사용료를 매년 12월말경 조수입의 14%를 거창군에 납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나. 그간추진현황

-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 2017.10.11.

다.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7.11월 중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2017.11월 하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2017.12.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시설점검: 2017.12.
- 수탁단체 위탁운영실시: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20.12.31.

라.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위탁운영 계획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위탁관리기간 만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

I 위탁법적근거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II 위탁시설현황

- 위치: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주요시설

시설내역	면적	세부내역	비고
계	7ha		
과원시설(체험장)	1.75ha	○사과체험장(1.5ha) ○오미자체험장(0.25ha)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5.25ha	○공원시설(5.25ha)	
		○부속건물 - 관리동 1동 (207㎡) - 농기계창고 및 저온저장고(61.2㎡)	

I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20.12.31. (재계약가능)
- 위탁대상 업무
 - 과원시설(사과, 오미자과원): 사과나무분양, 꽃나들이축제, 수확행사 등
 - 공원시설: 예취작업, 수목관리 등 공원 내 환경 정비
 - 관리동 및 농기계창고 환경 정비·청결 유지
- 수탁기관 모집: 공개모집
 - 공고: 거창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지

○ 위탁조건

- 공공시설로써 건립목적에 적합하게 나무분양, 꽃축제, 체험행사, 홍보 등 가능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사용료는 매년 12월까지 조수입의 14%를 거창군에 납부-오미자 받 수확물 발생 전까지 경영비 지원 (단, 오미자 받의 전적인 운영관리는 수탁자 책임)

○ 선정기준

- 관련조례 및 규정에 의거 수탁자 공개모집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공익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IV 그간 추진현황

-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2017.10.11.

V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7.11월 중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2017.11월 하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2017.12.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시설점검: 2017.12.
- 수탁단체 위탁운영실시: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20.12.31.

VI 기대효과

- 효율적인 과원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거창사과의 우수성 적극 홍보
- 지역의 새로운 관광벨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대

관 계 법 령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운영위탁)

-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4.10.01. 2015.12.1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